

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 (제15조제4항제8호 관련)

1. 관성제동장치는 조종장치, 전달계통 및 브레이크로 구성되며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조종장치 슬라이딩 마찰 부분은 자기윤활기능이 있거나 부품의 분해·조립 없이 윤활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전달계통은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압·유압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브레이크 작동상태에서 후진 시 정상적인 후진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제동력이 감소되고, 다시 전진 시에는 자동으로 정상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종장치의 작동구간은 브레이크가 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종장치 작동구간의 마찰부분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전달계통 및 브레이크와의 간섭이 없으며, 영구적인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전달계통은 기계식(강재를 연결한 방식) 또는 유압식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달계통의 일부 구간에 한하여 보호커버가 있는 경우는 케이블 구조로 할 수 있다.